

2015

연구보고서-17

I S S U E P A P E R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과제책임자 · 김동식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과제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Tel: 02-3156-7156

 e-mail: dskim@kwdimail.re.kr

요약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동식·김영택·정진주·김현우(2015).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실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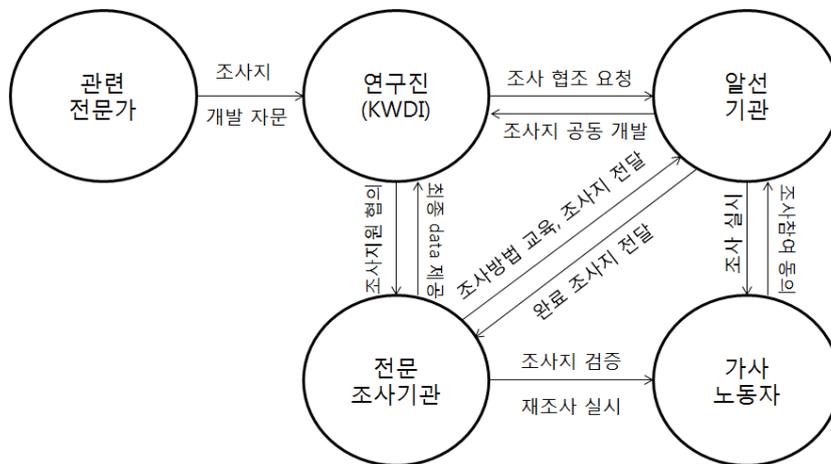
-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 그러나 가사서비스(이하 ‘가사노동’)의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
 - 그 근거로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11조, 11조 ‘가사(家事) 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제외’
 - 현재 까지 이 법안은 미개정 상태인데, 그 자체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것
- 2011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협약과 권고” 채택, 그 내용 중에는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등 건강·안전권 보장도 포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더 시급한 이슈였기에, 이들이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안전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
- 올해 초 정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발표로, 그 동안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이슈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들의 노동조건 및 환경,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슈로 논의 시작
-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과 권고에서 다룬 가사서비스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의 내용이 현재 가사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제·개정 및 정책화 추진 과정에 포함되도록 관련 근거 제시 필요

- 본 연구의 큰 방향은 ILO의 협약과 권고 내용 중 가사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이로 인한 건강악화 및 안전사고경험에 초점을 두어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정채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음

2 실태조사 및 분석결과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IV장, V장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적 특이성과 건강 및 안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 분석
- 조사대상: V장의 3개 유형의 알선기관에 등록된 가사노동자 800명
- 5곳의 알선기관 설문지 검토 참여 및 지부별 할당 등 조사 협조
- A기관 가사노동자 198명, B기관 200명, C기관 402명, 총 800명 응답



[그림 1] 실태조사 수행 체계

■ 분석결과

● 노동환경

- 가사노동자는 본인의 일에 대해 ‘육체적으로 고된 일’, ‘고객 평가가 중요한 일’, ‘숙련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로 인식
- 가사노동자는 현재 가사노동은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객의 추가 요청 등으로 인해 노동의 양이 늘어나면, 이 또한 완료해야 한다는 이중적 부담으로 시간적 압박감을 호소
- 가사노동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요구하는데, 이 중에 ‘무거운 물건을 밀거나, 들어 올리는 자세’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고, 4시간 노동 기준 2시간 이상 취하는 자세 중 66.4%가 서 있는 자세
- 점심식사는 가사노동의 유형(반일제, 종일제)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종일제로 일하지만 두 고객의 집을 옮겨 일하는 경우 17.2분으로 같은 집에서 종일제로 일하는 경우의 21.7분 보다 짧음. 두 고객의 집에서 일하는 경우, 공원이나 길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비율이 21%에 달함
- 가사노동 중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16.5%로 매우 낮으며, 고객의 집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38.1%로 가장 많음. 전체 22.4%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음
-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한 경우는 지난 2주간 47.9%
- 고객과 이용약관을 작성한 경우는 전체의 1/4 수준이며, 이들 중 휴식시간과 안전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50%대 수준

〈표 1〉 노동환경의 특성

영역	구분	주요 결과
일반적 특징	직업연수 (총 경력)	- 실태조사 응답자 총 800명의 직업연수는 1~3년 미만이 전체의 22.9%로 가장 많았고, 3~5년 21.4%, 6개월 미만 14.8%, 5~8년 미만 12.8%, 6~1년 미만 11.4%, 10년 이상 10.8% 등 순
	주 노동 일수 및 시간	- 주 4~5일 정도 일을 하며, 70~80%는 주중(주로 월·화·목요일)에, 20~30% 정도만 주말 노동 - 종일제(하루 8시간 기준)는 전체의 30~40%, 반일제는 주로 오전 시간대 -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4.8시간(15시간 미만자도 포함된 결과임) ◦ 주 36시간 이상은 전체의 19.8%, 15~36시간 미만은 57.8%, 15시간 미만은 22.5% ◦ 주 36시간 미만 가사노동을 하는 주된 이유: 집안에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31.5%, 건강이 좋지 않아서 27.7%, 일거리가 없어서 16.1% 등 순 ◦ 주 36시간 이상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자 중 29.4%는 '현재 아프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 이들은 가구소득에서 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향후 아프더라도 계속 일해야 한다고 응답
노동 환경 특성	노동관	- 현재 일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일에 대해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6.6%로 가장 많았고, '고객의 평가가 중요한 일이다' 84.4%, '숙련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다' 76%,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다' 75.3% 등의 순
	노동시간의 적절성	- '내가 하는 일이 주어진 시간에 마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2.4%이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가사서비스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57.1%,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도중 시계를 자주 본다'는 응답자는 39.0%로 나타나, 지금의 가사노동이 주어진 시간(보통 4시간 기준)에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고객의 추가 요청 등으로 인해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이 또한 완료 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보여줌
	위험한 신체자세와 노출시간	- 5가지 가사노동을 위한 신체 자세 중 '매우 힘겹다'는 응답 ◦ '무거운 물건을 밀거나, 들어 올리는 자세'로서 26.4%가 응답. 이 자세 및 노동활동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그 다음으로 '손과 손목, 팔 등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서 19%가 응답 - 신체적으로 '힘겹다'는 응답자 대상 4시간 기준 노출 시간 중에

영역	구분	주요 결과
		2시간 동안 지속하는 자세의 비율을 보면 ◦ ‘계속 서 있는 자세’가 66.4%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굽히고 비트는 자세, 밀고 들어 올리는 자세, 눌러거나 부딪치는 자세 등은 20%대 - ‘먼지나 가루 흡입’, ‘세제 등 화학물질 흡입’은 위의 신체 자세보다 노출되는 시간은 짧으나, ‘힘겹다’는 응답은 오히려 더 높음
	점심식사	-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유형에 따라 점심식사 여부 및 제공자를 보면, ◦ 같은 고객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총 272명으로 84.9%가 점심 식사를 하며, 이들 중 61.9%가 고객이 제공, 38.1%는 본인 스스로 해결 ◦ 두 고객의 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총 393명으로 87.3%가 점심식사를 하며, 이들 중 18.9%만 고객 제공, 81.1%는 본인 스스로 해결 ◦ 반일제 근무 유형: 총 646명으로 71.1%는 점심식사를 하며, 이들 중 14.8%는 고객 제공, 85.2%는 본인 스스로 해결 - 평균 식사소요 시간 ◦ 같은 고객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21.7분 ◦ 두 고객의 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17.2분 ◦ 반일제 근무 유형: 29.4분 - 점심식사 장소 ◦ 같은 고객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고객 집 77.5%, 식당 13.4%, 본인 집 13.4% 등 ◦ 두 고객의 집의 종일제 근무 유형: 고객 집 41.4%, 식당 25.7%, 공원/길거리 21.0%, 본인 집 9.3% 등 ◦ 반일제 근무 유형: 고객 집 17.2%, 본인 집 65.8%
	휴식시간	- 가사노동 중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 고객의 집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 이들 모두는 전체의 54.6%(437명) ◦ 휴식을 취하는 437명 중 4시간 가사노동 기준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이 44.9%로 가장 많고, ‘10~20분’이 36.8%, ‘20~30분’은 14% 등의 순 ◦ 437명 중 22.4%만이 지금 휴식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 - 가사노동 중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363명(전체의 45.4%)의 83.8%는 그 이유로 ‘주어진 일을 끝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 이외 ‘고객이 싫어해서’와 ‘고객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도 각각 5.5%와 5.8%

영역	구분	주요 결과
	수분섭취	- 전체 800명 중 90.5%는 가사노동 중에 수분섭취는 가능하다고 응답함.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76명 중 64.5%는 '주어진 일을 끝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준섭취 할 시간이 없다고 함. 이외 '고객이 싫어해서'와 '고객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도 각각 22.4%와 9.2%
	몸이 아픔에도 참고 일한 경험, 병가 및 대체근무	- 지난 2주간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전체 800명 중 47.9%인 383명이 '있었다'고 응답. 한편, 가사노동으로 인해 피로도(매우 피곤 + 대체로 피곤)를 호소하는 경우는 66% -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아파서 가사도우미 일을 선 적 병가를 낸 경우는 11.1%(89명)이었고, 이들 중 30~40%는 알선기관에 대체근무를, 그리고 고객에게는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
	이용약관 (계약서 작성)	- 고객과 이용약관을 '작성한다'는 경우는 전체의 1/4인 25.3%(202명) 뿐이었고, 나머지 60.6%는 '작성하지 않는다', 14.1%는 '모르겠다고 응답' - 이용약관 작성자 중 약관에 휴식시간과 안전사고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54.4%와 54% - 고객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경우도 전체의 13.6%(109명)가 있었음

● 안전사고

- 가사노동자의 82.1%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호소
- 가사노동 관련 주요 7개 안전사고 중 1개 이상 경험자는 전체의 76.1%, 평균 2.27개 경험
- 고객의 요청(무거운 물건 옮기기, 높은 곳 청소하기 등)에 의한 안전사고 경험이 약 50%, 주로 타박상이나 20%는 염좌나 화상, 3.3%는 골절 경험, 그러나 의료비용은 90% 이상 가사노동자 본인이 부담
- 고객으로부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8%,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및 성희롱 1.6%, 괴롭힘 1%, 물건 파손 의심 14.1%, 물건 절도 의심 7.8% 경험

〈표 2〉 가사노동자의 안전

영역	구분	주요 결과
안전	안전사고 불안감	-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매우 신경이 쓰인다'는 22%,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60.1%가 응답. 전체 82.1%가 불안감 호소
	안전사고 경험	- 7가지 주요 가사노동 직무에서 평균 2.27개 직무에서 안전사고 경험 - 1개 직무 이상 안전사고 경험자는 전체 800명 중 76.1%(609명) 해당 ◦ 51.5%가 욕실/화장실 청소 시 화학제품(락스, 세제 등) 사용으로 두통이나 복통, 어지러움 경험 ◦ 47.9%가 이불을 털거나 세탁물, 쓰레기 등 물건을 들거나 옮기다가 손목이나 발목, 허리 등을 빼끗한 경험 ◦ 38.4%가 못/나사, 주방용 칼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 ◦ 33.9%가 욕실/화장실 등에서 미끄러진 경험 ◦ 32.8%가 요리나 옷을 삶다가 뜨거운 불이나 솥에 덴 경험
	고객의 위험성 높은 직무 요청과 안전사고 경험	- 고객으로부터 요청받는 여러 직무 중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기'와 '높고 위험한 곳 청소하기'를 요청받은 경험은 각각 49.6%와 53.2%이었음. 어느 하나의 직무를 요구받은 경우는 61.3%(490명) - 이들 중 18.4%(90명)는 고객의 위험한 직무 요청에 안전사고를 경험 ◦ 78.4% 타박상, 37.8% 찰과상, 23.3% 염좌, 20% 화상, 15.6% 창상/자상, 7.8% 좌상, 3.3% 골절 등 피해 경험 ◦ 70%(63명)만 병원치료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함(여기서 거의 80%는 약국 치료임) ◦ 63명 중 90.5%는 본인이 치료비 부담, 고객 부담은 6.3%, 본인과 고객 공동 부담은 3.2%, 본인과 알선기관 공동 부담도 3.2%이었음
	고객의 부당함 언행 및 오해 경험	- 8%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경험 - 1.6%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경험 - 1%가 위협이나 괴롭힘 경험 - 14.1%가 물건 파손 의심 경험 - 7.8%가 물건 절대 의심 경험

● 건강상태

- 가사노동자 본인의 건강에 대해 41.9%는 ‘나쁘다(불건강)’고 평가
- 54.4%는 가사노동 이후 건강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평가
- 7가지 신체 부위 통증에서 한 부위라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77.3%, 특히, ‘손/손목/손가락’과 ‘어깨’ 부위 통증을 주로 호소
- 의사진단 받은 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고, 피부질환, 정신 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순
- 스트레스는 PWI-SF 기준 17.5%, BEPSI-K 기준 4.4%가 고위험군

〈표 3〉 가사노동자의 건강

영역	구분	주요 결과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800명 중 41.9%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 ‘좋다’고 응답. 이는 제IV장의 KWCS 결과(36.8%, 단 여기서는 40세 이상만 분석)와 유사 - 45.8%는 동년배 여성에 비해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 - 그렇지만 KWCS 결과에서 ‘전체 여성노동자’의 64.3%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
	가사노동 이후 건강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노동을 한 이후 건강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응답은 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안 좋아졌다’는 5.8%, ‘조금 안 좋아졌다’는 48.6%
	신체부위통증과 가사노동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가지 주요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현재 통증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800명 중 77.3%인 618명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손/손목/손가락’과 ‘어깨’ 부위에 통증 호소 비율이 각각 77.7%와 77.2%로 가장 높았음 ◦ 이어 ‘허리(71%)’, ‘무릎(60.4%)’, ‘팔/팔꿈치(58.1%)’, ‘목(55.7%)’, ‘다리/발(51.3%)’ 등의 순위로 응답률이 높았음 - 현재 통증이 호소한 618명 중 86.6%(매우 그렇다 30.4%, 조금 그렇다 56.2%)가 현재 가사도우미 일을 한 이후에 지금의 통증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부위별로 볼 때, ‘손/손목/손가락’ 부위가 가사도우미 일로 통증을 얻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78.1%로 가장 많았고, ‘팔/팔꿈치’와 ‘다리/발’은 각각 76.3%와 76%로 그 다음 순위로 나타남 ◦ 신체부위별 가사도우미 일관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60~80%가 가사도우미 일로 통증을 얻었다고 응답함

영역	구분	주요 결과
		- 통증 호소자 중 통증이 매우 심각한 경우는 신체 부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4%~20%로 나타남. 또한 통증 지속 기간도 30%는 1개월 이상이었고, 이들의 66%는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됐다고 함
	의사진단 질환과 가사노동 연관성	-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질환, 정신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순이었음 ◦ 근골격계 질환 진단율: 요통/디스크 17.8%, 손목터널증후군 10.3%, 골다공증 8%, 류마티스관절염 7.8%, 오십견 7.1% 등 ◦ 피부질환 진단율: 주부습진 9.8%,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6.8%, 대상포진 4.1% 등 ◦ 정신질환 진단율: 불면증/수면장애 7.5%, 우울증/불안장애 3.1% ◦ 호흡기질환 진단율: 알레르기성 비염 8.8%, 만성기관지염과 천식 1~2% - 의사진단 받은 대상자의 병원치료율은 질환에 따라 60~90%로 다양한데, 근골격계 질환이 80~90%로 높았고, 만성피로 및 불면증/수면장애는 60%로 낮았음 - 의사진단 질환이 가사도우미 일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질환에 따라 40~70%대로 다양함 ◦ 대상포진, 손목터널증후군이 70% 중후반대, 요통/디스크, 불면증/수면장애 등은 40% 중후반대, 이외 질환들은 50~60%대
	스트레스	- PWI-SF(심리사회적 스트레스 평가) 및 BEPSI-K(한국어판 스트레스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가사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된 결과 ◦ PWI-SF 기준: 17.5%는 고위험군, 72.7%는 잠재 스트레스군, 9.8%만 건강군으로 분류 ◦ BEPSI-K 기준: 전체의 4.4%가 스트레스 위험군으로 분류

● 노동환경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 가사노동의 환경적 특이성 중 ‘신체적 위험자세 노출 시간’, ‘고객의 무리한 작업 요구 및 부당한 대우’,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한 경험’, ‘노동 중 휴식가능 여부’, ‘이용약관 작성 및 건강·안전 내용’은 모두 건강(주관적 건강,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와 연관성 확인

〈표 4〉 노동환경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영역	구분	주요 결과
노동 환경과 건강 및 안전 연관성	신체적 위험자세 노출 시간	- 가사노동을 하면서 신체적 위험자세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주관적 불건강,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경험, 고위험 스트레스군 및 안전사고 경험을 모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목과 허리, 무릎 등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와 '손과 손목, 팔 등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뚜렷한 결과 확인
	고객의 무리한 작업 요구 및 부당한 대우	- 고객으로부터 위험하고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요구받은 가사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음 - 고객의 부당한 대우(모욕적인 비만이나 고함, 욕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위협, 괴롭힘, 불건 파손/절도 오해 경험 등)를 경험한 가사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
	몸이 아픔에도 참고 일함	- 주당 36시간 이상 가사노동자로만 살펴봐도, 그리고 최근 2주간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경험 여부로 살펴봐도, 모든 건강지표 및 안전지표에서 부정적 결과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주 기준으로, 아파도 참고 일한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경험율은 82.3%, 안전사고율은 88.2%로, 비교집단의 응답률 55.1%, 73.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근무 중 휴식 가능	- 가사노동을 하는 중에 휴식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자의 주관적 불건강,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경험 및 안전사고 경험을 모두 높음
	이용약관 내 건강, 안전 포함	-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해당자가 적어 나타난 결과일수도 있음), 전반적으로 이용약관에 건강·안전 내용이 포함된 경우 건강문제, 안전사고 문제에 해당되는 비율이 낮음
	가사노동 환경의 특이성 (노동관)	- 사회가치 측면, 노동강도 측면, 건강위험 측면, 근로조건 측면, 감정노동 측면으로 구성된 14개 노동관 모두에서 개별 측면에서 부정적인 응답자의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 경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가치 측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일 노동강도 측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된 일, 노동강도가 강한 일 건강위험 측면: 힘들고 불편한 자세로 하는 일,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일, 시간적 제약을 받는 일 근로조건 측면: 휴식과 여유가 없는 일, 고용이 불안정한 일, 하는 일에 비해 보상이 적은 일 감정노동 측면: 고객의 평가가 중요한 일, 고객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일, 고객의 무례함을 참아야 하는 일

● **노동환경이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가사노동의 환경적 특이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 이를테면 휴게시간, 고객의 위험한 작업 요구, 아플 때 일한 경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관련 교육 경험, 물건 파손/절도 오해 및 부당한 대우 경험 등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함(분석 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신체적 위험 요인 변수는 통제함)
- 통제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개별 노동환경적 특이성이 지닌 건강과 안전사고에 대한 영향력은 명확히 확인됨(분석모형 1 참조)
- 이들 노동환경적 특이성을 모두 고려할 경우, 비록 일부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지만, 그 연관성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고객으로부터 위험한 작업을 요구받는 것, 아플 때 일을 한 경험 등은 건강과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5〉 노동환경이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odds ratios)

노동환경적 특이성	주관적 불건강	2주 이상 우울감 경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경험	안전사고 경험
휴게시간 부재 혹은 불충분 (ref: 충분)	1.73	1.41	1.37 +	0.127
고객의 위험한 작업 요청 경험 (ref: 무경험자)	1.92 +	1.25	1.99 ***	7.11 ***
아플 때 일한 경험 (ref: 무경험자)	3.21 ***	3.52 ***	2.63 ***	3.49 ***
근골격계 질환 관련 건강관리 교육 경험 (ref: 무경험자)			1.15	
안전사고 예방 교육 경험 (ref: 무경험자)				1.48

노동환경적 특성	주관적 불건강	2주 이상 우울감 경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경험	안전사고 경험
물건 파손/절도 오해 경험 (ref: 무경험자)		2.42 ***		
부당한 대우 경험 (ref: 무경험자)		2.29 ***		

주: 위 표의 다변량 분석결과는 연령, 거주지역, 가구원 수, 가구소득, 혼인상태, 학력, 운동 여부 변수를 보정한 것임(우울감, 근골격계질환 및 안전사고의 경우 주관적 건강도 보정함)

● 알선기관별 건강·안전 교육 차이 및 정책수요

- 앞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 관련 교육은 건강과 안전사고와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 제공에 있어 알선기관별 차이도 확인
- 가사노동자 대다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관련 교육 및 가이드라인(안내서) 개발·배포 필요성 제기

〈표 6〉 알선기관별 건강·안전 교육 차이 및 정책수요

구분	주요 결과
알선기관별 건강·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하다는 응답: C기관 > B기관 > A기관 ◦ 대충받았다는 응답: A기관 > B기관 > C기관 ◦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 A기관 > B기관 > C기관 - 근골격계 질환 및 건강관리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하다는 응답: B기관 > C기관 > A기관 ◦ 대충받았다는 응답: A, C기관 > C기관 ◦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 A, C기관 > C기관
건강·안전 관련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안내서) 제작·배포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 800명 중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가사노동자 입장: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89.4%, 이어 '건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가 85.6% 등 순 ◦ 알선기관 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교육'의 필요성을 84.3%,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가 82.1% 등 순 ◦ 고객 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의 필요성을 63.9%가 응답

3 정책제언

▣ 정부의 과제

-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 추진
 -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입법화
 -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고용관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정이 가장 실현 가능하나,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기준법』 개정
 - 입법화 시 ILO의 건강·안전 관련 권고 내용은 필수 사항으로 반영 필요

〈표 7〉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안 관련 특별법 안

특별법 주요내용 ¹⁾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사서비스”란 청소·세탁·주방일 등 일반가사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고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사종사자”는 제13조에 따라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는 제8조에 따라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략 -</p> <p>제9조(가사서비스의 제공) ①제공기관은 소속 가사종사자에게 근로기회가 균등히 배분되고,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신체적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부당한 요청이나 대우로 인해 가사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의료비용 등)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공기관은 ③항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p> <p>제13조(근로계약)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가사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특별법 주요내용¹⁾

1. 임금
2. 최저근로시간
3. 제15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4.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및 수칙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4조(휴게 등) ①제공기관 및 이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동, 식사, 휴게 등을 위한 적정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근로시간이 4시간 혹은 그 미만인 경우,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10분 이상은 주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사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근무시간이 624시간 이상인 가사종사자에게는 6일 이상의 유급휴가
1년간 근무시간이 468시간 이상 624시간 미만인 가사종사자에게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
제공기관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468시간 미만 근무한 가사종사자에게 3개월간 117시간 이상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입주 가사종사자에 관한 특례) ①가사종사자가 이용자의 가구 내 또는 시설 등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입주하여 근무함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육훈련) ①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가사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공기관은 소속 가사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련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③국가는 ②항에 관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하며, 관련 안내서(지침)서를 개발하여,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배포해야 한다.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이 법에 따른 가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는 이 법에 따른 제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에 따른 가사종사자·제공기관·이용자에는 『파견근로자보험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공기관 및 가사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 1) 표대중(2015).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개선 제도화 방안에 따른 변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안 관련 전국 순회 간담회 발표자료. 5월 7-26일. 한국YWCA연합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우렁각시 공동주관. 미간행.

- 가사 업무의 표준화 마련
 -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가사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동권이 왜곡되지 않도록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이용자 간 충분한 합의 과정 거쳐 업무의 표준화 마련 선행
 - 업무 표준화 시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관련 내용 반드시 반영 필요

-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없는 한 가사노동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어려움
 -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 필요

- 건강·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안내서 제공
 - 가사노동자의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교육 제공 필수
 -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과 관련 안내서(지침서) 개발·배포 지원

- 최소한의 권리로서 휴게시간 보장
 -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유형에 맞는 휴게시간 적용 필요
 - 가사노동이 보통 4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만큼, 그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

-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제공
 - 가사노동의 특성 상 고객 집 이동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음
 - 가사노동자를 비롯한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해 여성 친화 쉼터(공간) 등 시설 마련

- 지역기반의 가사노동자 건강·안전 지원체계 마련
 - 가사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및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로

부터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지역 소재 보건소 및 근로자건강센터 등 공적 보건의료인프라와 연계,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여성(건강)친화적 가사노동 문화 확산과 관련 도구·제품 개발·보급
 - 고객의 부당한 요구로 화학제품에 노출되어, 호흡기계 질환, 피부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캠페인을 통한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건강)친화적 문화 확산 필요
 - 한국여성과학기술자협회 등과 협력하여 가사노동과 관련된 여성(건강)친화적 도구 및 제품 개발·보급 추진

■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및 이용자의 과제

- 가사노동자의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에 따른 책무와 혜택 등에 관한 홍보와 관련 교육 필요
 - 이를 통한 가사노동자의 사회보장에 대한 저항감 완화
- 가사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되므로, 이에 알선기관의 정확히 인지 필요
 -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만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알선기관의 노력 필요
- 연대를 통한 가사노동자의 권한 강화
 -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역량 강화 필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대 구축과 강화 필요

4 기대효과

-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했던 이들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근거 마련
-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당사자(알선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측면의 우선적 정책과제 제언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사업안전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